

光州廣域市西區保育施設設置運營條例中改定條例案 審 查 報 告

1996 年 2 月
社會都市委員會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6年 2月 13日 光州廣域市 西區廳長 提出
및提出者
- 나. 回附日字 : 1996年 2月 14日
- 다. 上程日字 : 第54回 西區議會(臨時會) 會期中
第3次 社會都市委員會(1996年 2月29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家庭福祉課長 李恩愛)

가. 提 案 事 由

- 現代社會의 産業化, 都市化에 따른 女性의 社會參與 增加 및 家族構造의 핵가족화로 急増하고 있는 保育需要에 能動的으로 對應하기 爲하여 未洽한 部分을 合理的으로 改定하여 圓滑한 保育施設運營 및 家庭福祉增進을 도모하기 위함

나. 主 要 骨 子

- 第4條(運營管理) 委託運營에 있어 議會의 意見收斂事項
- 第5條(資格) 受託施設長 資格에 關한 事項
- 第6條(從事者任命) 受託施設長 및 其他 從事者 任命에 關한 事項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吳龍洙)

- 光州廣域市西區保育施設設置運營條例中 第1條 目的 "公立保育"을 削除, 第4條 1項 運營管理에 있어 "議會의 意見을 收斂해야한다"로 되어 있는바 영유아법 第4條와 영유아법 施行令 第3條에 地方 保育委員會로 하여금 保育施設의 設置 運營에 關한 事項 등을 審議토록 하고 있으며 同條例 第4條2項(受託者를 受託施設長으로 同條例 第5條(資格을 受託施設長 資格으로) 第6條(從事者 任命을 其他 從事者로)를 改定하여 영유아에 對한 專門的인 保育서비스를 提供하여 家庭福祉增進에 寄與하도록 하기 爲한 改定條例案으로 原案과 같이 改定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생략

5. 討論 要旨 : 생략

6. 審查 結果 : 수정안 가결

7. 少數意見要旨 : 없음

8. 其他 事項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1996. 2. 29.

발 의 자 : 김영준 의원외 4 인

1. 수정사유

- 부의안건은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보육수요의 급증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수탁시설장의 자격을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하며, 보육아동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안 제4조 제1항중 "위탁운영 할 수 있다"를 "위탁운영하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로 한다.
 - 안 제5조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5조로 하되 제1항중 "수탁자"를 "수탁시설장"으로 하고 제3호중 "만35세 이상인 자"를 삭제함

3. 기타참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제4조 제1항중 "위탁운영 할 수 있다"를 "위탁운영하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로 한다.

○ 안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 5 조 (수탁시설장 자격) ① 수탁시설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가진 자
 2.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제외)이나 유치원에서 5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덕망이 높은 자
- ②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4조(운영관리) ① ----- ----- ----- ----- -----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운영관리) ① ----- ----- ----- ----- ----- 위탁 운영하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5조(자격) ①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가진 자	제5조(수탁시설장 자격) 수탁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 2호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중 시설장 자격기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수탁시설장 자격) ① 수탁시설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가진 자

현행	개정안	수정안
2.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제외)이나 유치원에서 5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관내에 거주하는 만 35세이상인 자로서 덕망이 높은 자 ②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2.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제외)이나 유치원에서 5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3.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덕망이 높은 자 ②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립보육"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위탁운영하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수탁자"를 "수탁시설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탁시설장 자격) 수탁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 2호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중 시설장 자격기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타 종사자 임명) 기타종사자는 수탁시설장이 영유아보육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명하되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수탁자가"를 "수탁시설장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u>공립보육 시설</u> (이하 “어린이집” 이라 한다)의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_____ _____ (삭제)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제 1 조(목적) _____ _____ (삭제)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제 4 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되 <u>의회의 의견을 수렴</u> 해야 한다.	제 4 조(운영관리)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제 4 조(운영관리)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자(이하 “ <u>수탁자</u> ” 이라한다)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에 대한 권리행사는 물론 구조 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_____ _____ “수탁시설장”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② _____ _____ “수탁시설장”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현행	개정안
제 5 조(자격)①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가진 자 2.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제외)이나 유치원에서 5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관내에 거주하는 만 35세이상인 자로서 덕망이 높은 자 ② 구청장이 직접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 조(수탁시설장 자격) 수탁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 2호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중 시설장 자격기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 6 조(종사자 임명) ①어린이집원장의 임명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있는자를 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기타 종사자는 원장이 임명하되 10일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얻어야 한다.	제 6 조(기타 종사자 임명) 기타 종사자는 수탁시설장이 영유아보육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명하되 10일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 7 조(위탁의 정지 및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의 정지 또는 해제를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u>수탁자</u>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u>수탁자</u>가 시설재난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하고 있을 때 3. <u>수탁자</u>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훼손하였을 때 4.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 또는 해제하였을때 위탁자 및 제3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하여는 <u>수탁자</u>가 그 책임을 진다.	제 7 조(위탁의 정지 및 해제) ① ----- ----- ----- ----- 1. <u>수탁시설장</u>이 ----- ----- 2. <u>수탁시설장</u>이 ----- ----- 3. <u>수탁시설장</u>이 ----- ----- 4. ----- ----- ② ----- ----- ----- <u>수탁시설장</u>이 ----- -----